

노동포커스

산업안전,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박찬임*

노동권은 사회권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이는 일자리가 사회성원이 소득을 얻고 소속감을 가지며 사회와 교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에서 혹은 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바로 산업재해이다. 어떤 사람이 산업재해 때문에 사망하거나 일터를 잃게 되면 개인은 건강·소득·사회적 소속 등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들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아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장은 이상 속에서는 그릴 수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을 무조건 금기시하고 억제할 경우 이는 다른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 하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산재 은폐의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다. 이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가운데 산재 발생률 자체는 낮지만 중대재해 발생률은 높은 국가라는 점은 위의 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산재 발생률이 낮은 것이 반드시 그 나라의 작업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장애출현율이 높은 것이 그 나라에 더 많은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근로가능연령 가운데 장애인 출현율은 6%로 OECD국가 중 가장 낮다. 반면 영국이나 독일의 출현율은 17%대이다. 이 수치를 보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국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장애를 보고하는 비율, ‘장애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기준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장애로 더 많이 인정하는 사회, 즉 장애인 출현율이 높은 사회가 인간에 대한 보호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산재에도 적용된다면, 산재를 산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직업병에 대한 인정범위의 확대 등은 그러한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cpark@kli.re.kr).

예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주장을 산재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산업재해는 있을 수 있는 재해와 없어져야 할 악성재해로 구분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의 감소와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산업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첫째,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이고, 둘째, 다른 조치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는데 발생한 재해이며, 셋째, 재해가 발생한 층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대재해를 줄여야 할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취약계층에게 재해의 발생이 집중된다면 이는 그 사회의 도덕성과 연계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상당수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중대재해의 발생은 현재의 원하청구조와 산업안전의 책임에 대한 배분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기업은 이윤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비·보수 등의 업무를 하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비·보수 업무는 사고의 위험 또한 높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위험은 하청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러 하청업체가 서로의 공정을 모른 채 독립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현재의 원하청구조에서,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포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즉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청업체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산재책임자 처벌 특별법 등은 그러한 시도의 하나일 것이다. 이는 기업에게 안전관리에 힘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그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의 특집인 산업안전과 노동은 산업재해의 이러한 두 측면에 대해서 다루었다. 우선 중대재해의 감소와 관련된 글은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이슈’, ‘최근 화학사고 발생의 문제점과 예방대책’이고, 산재인정범위 확대와 관련된 글은 ‘직업성 암의 기준과 보상현황’이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울리히 벡이 이야기하는 위험은 하층에 축적되고 부는 상층에 축적되는 사회는 아닐 것이다. 위험이 하층에 축적되지 않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산재보험에서 건설업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청의 산재보험 가입을 원청의 책임으로 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은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 **KLI**